국민연금공단 준법지원실 준법감시담당자(기금운용직) 공개모집

1. 채용분야 및 계약기간

채용분야	인원	고용형태	채용직급	수행 업무	계약기간
컴플라이언스 (국내변호사 자격소지자)	1명	계약직	전임 운용역	◦ 기금운용 관련 사전준법성 검토 ◦ 기금운용 포트폴리오 점검 ◦ 기금투자 법규위험 검토 등	3년 ~5년*
국내 변호사	1명	계약직	전임 운용역	◦ 기금운용 관련 투자계약 검토 ◦ 국내 및 해외 주식 의결권 행사 검토 등 ◦ 기금투자 법규위험 검토 및 법무지원 등	

* 계약기간 종료 후 업무평가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

2. 공통 자격요건

○ 성별.연령*.학력 등 제한 없음

* '만 60세 도달자'는 공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 요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및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 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경력 요건 (경력산정 기준일 : 공고 시작일)

○ (**컴플라이언스**) 공고일 현재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국내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법무경력[1] 또는 국내 변호사 자격 취득 이전과 이후의 투자실무경력[2]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국내 변호사**) 공고일 현재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국내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법무경력[1] 또는 투자실무경력[2]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1) **법무경력 :**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법률자문, 소송 등을 수행한 경력
   ○ (국내 변호사 자격)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 실무수습기간은 경력기간에 포함>
2) **투자실무경력 :** 금융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국내·외 금융회사(투·융자 기구)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등에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심사), 내부감사, 자산배분(포트폴리오관리), 운용(금융투자상품 및 그 밖의 대체투자), 평가(신용, 성과) 및 투자자산 회계처리 등

○ 경력요건 산정 관련 주의사항

- 전형기준에 부합하는 **경력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경력사항 기재 시 **세부수행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되, **회사별로 작성**하고 동일 회사 내에서 부서 이동이 있는 경우 **부서별로 경력을 구분하여 기재**
-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경력**은 투자실무경력 및 채용직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지원서에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임용(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우대사항 (각 전형 단계별(서류, 면접)로 모두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른 장애인(5점)

5.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 11. 17.(화) ~ 2026. 12. 1.(화). 18:00

○ 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접수에 한함

※ 우편·방문·이메일로는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많아 인터넷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6. 전형 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인성검사, 평판조회 후 실시) → 전력조회・신원조사・약물검사 등 검증 → 임용

전형절차	전형방법	전형일정
서류전형	◦ 직무적합성, 전문능력 등을 기준으로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선발 -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7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서류전형합격자에 대해 인성검사 및 평판조회 실시 후, 면접전형 실시 ※ 인성검사 및 평판조회 미참여자는 면접전형에 응시불가 ※ 인성검사 및 평판조회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어 참고자료로 활용됨	'26.12월중
경력검증	◦ 서류전형 합격자는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증빙자료*를 공단 채용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경력 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등록증서) 등 ◦ 경력 증빙자료 미제출 시 다음 전형 응시 제한됨 ◦ 채용 직급별 요구 경력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전형 응시 제한됨	'27.1월중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인성검사 및 평판조회 응시자, 경력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하며, 일정 및 장소 개별통보 ◦ 전문능력, 직업윤리의식 등을 기준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1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27.2월중
최종 합격자 검증	◦ 금융감독원 전력조회·신원조사·약물검사* 등 검증 ※ 전력조회, 신원조사, 약물 검사 결과 등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	'27.3월중

전형절차	전형방법	전형일정
	· 전직 근무기관에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 · 공단「인사규정」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약물검사에 따른 양성 판정 * 최종합격자 검증 단계에서 대상자에게 '**약물검사서**' 제출 안내 예정	
임용	-	'27.3월중

*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근무조건

○ (고용형태) 계약직(입사 시 3년~5년으로 계약하고, 업무평가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

○ (급여수준) 공단 내부 방침에 따름

○ (근무지) 국민연금공단 준법지원실(전북 전주시 소재)

○ (근무시간) 주 5일(일 8시간)

8. 제출 서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구분	서 류 명	비고
필수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3년 이상의 경력이 증명되어야 하며, 직위 및 담당업무 등 상세히 표출 * 제출방법 등은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1부	
	◦ 국내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또는 등록증서 사본 1부	-
해당자 제 출	◦ 자격증 사본 1부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 원본 1부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은 '전체이력' 표출되는 자료로 제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출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기 제출

※ 제출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인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9. 기타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서류전형시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와「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은 서류전형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 전형단계별 안내는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문자 또는 메일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인성검사 및 평판조회 미참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우리 공단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재직 중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개인투자가 금지되며, 매년 본인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주식 거래내역 등의 조회를 실시합니다. 또한, 재직 중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채용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사람 포함)은 해당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채용 지원 자격을 제한합니다.

○ 채용 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의 경우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사람,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사람, 면접시험에서 우선되는 평정요소의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퇴직으로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하되, 동일한 분야의 채용이 실시되는 경우 그 임용일 전까지 운영).

○ 채용 시 퇴직 후 재취업 정보에 대한 조회·제공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입니다.

○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제11조에 의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제출했던 증빙서류 일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하며,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반환청구방법)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npcb0a05@nps.or.kr로 신청

○ 금융감독원 전력조회, 신원조사, 약물검사 등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준법지원실(이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npcb0a05@nps.or.kr)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 불가

○ 채용 관련 비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준법지원실 담당자(☎ 063-711-09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7일

NPS 국민연금공단 National Pension Service